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11.10.1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0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1년 10월 12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전산정보과장 이명성

가. 제안이유

동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정보화 환경이 정보화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여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정책의 수립,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, 「정보격차 해소에 관한법률」, 「지식정보자원관리법」을 통합하여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으로 2009. 8.23일 통·폐합되고, 「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이「전자정부법」으로 2010. 5. 5일 통·폐합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

나. 주요내용

(1) 조례안 제명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기본 조례」로 변경

(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기본 조례안」의 제7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로 통합

(3) 안 제7조에서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 제11조(정보화책임관)에 의한 정보화책임관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

(4) 안 제24조에서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보시스템 관리, 정보화자료 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

(5) 안 제3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방범, 쓰레기투기방지, 주차관리, 교통정보수집, 불법주정차단속, 재난, 재해예방, 시설물관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,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

(6) 안 제39조에서는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안 별표 3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시함

(7) 부칙 안 제2조에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하고,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 당시 "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협의회"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누적된 마일리지는 안 제47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마일리지로 보도록 함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정보화 관련 법률을 통·폐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」에 맞추어 우리 구의 정보화를 효율적,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, 입법예고 및 우리 구 조례규칙 심의회 등을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